

또 다른 기술력, 디자인 법적으로 보호하기

※ 본지 118호와 이어집니다.

Ⅶ. 디자인

1.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Design)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typefaces)를 포함한다.)의 형상(shape), 모양(pattern)이나 색채(color)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인 '물품(또는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GUI(Graphic User Interface)도 디자인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디자인 등록출원

1)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 제품류,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합성 수지 등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으로 해야합니다.

2) 디자인 심사 등록출원

디자인 무심사 등록 출원 대상 이외의 물품은 디자인 심사 등록출원으로 해야 합니다.

3. 디자인의 성립조건

1) 물품성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보호법은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된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2) 형태성

디자인은 형상(즉,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또는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모양(즉,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 색채(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것입니다.

3) 시각성

디자인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시각 이외의 다른 감각에 의하여 인식이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또는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감은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상의 심미성은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디자인의 등록요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출원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이 반복 생산 가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연물을 그대로 디자인의 구성 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대량 생산할 수 없는 것 또는 순수 미술의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규성

신규성은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 판매 또는 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출원 전에 판매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물품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 공연 실시되거나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또는 이들에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할 경우 "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작성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디자인 보호법상의 창작성은 객관적인 창작성으로서 저작권법상의 주관적 창작성과는 다릅니다.

5. 디자인권

1) 존속 기간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디자인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다만, 유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기본 디자인권과 함께 소멸합니다.

2) 디자인권의 발생

등록결정을 받은 후 소정의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함으로써 디자인권은 발생합니다. 설정 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후 4년차분 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 단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디자인권의 효력

(1) 디자인권의 내용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2)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이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미치는 것은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 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 디자인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디자인의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디자인권 침해구제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 배상 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상 침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